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80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이강일 · 김문수 · 백혜련
이인영 · 김남희 · 김남근
염태영 · 박정현 · 민병덕
박홍배 · 김용만 · 박상혁
김현정 · 임미애 · 강준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70여 개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행정기관은 개별적 법률 규정에 따라 식품, 제품 등을 분류하고 각각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물품 등의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44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소비자안전센터는 제7항에 따른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수집하는 위해정보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44호 소비자기본법 일 부개정법률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⑦ (생 략) <u><신 설></u></p> <p>⑧ (생 략)</p>	<p>법률 제21444호 소비자기본법 일 부개정법률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소비자안전센터는 제7항에 따른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수 집하는 위해정보 관련 자료를 연계·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위해정 보 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p>